공 개

의안번호	제 92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2. 13. (제 3차)

의결사항

㈜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이 억 원
제출 연월일	2026. 2. 13.

1. 의결주문

㈜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4.6.26.~2024.7.19. 기간 중 실시한 ㈜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가.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
(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)

□ 과태료 5억 4,350만원을 부과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: <붙임 2>

다. 관계부서 협의

○ 2025년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(2025.12.18.) 심의필

○ 2026년도 제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(2026.2.6.) 심의필

<별지>

㈜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□ 조치대상 : ㈜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

○ 과태료 5억 4,350만원 부과

※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

2. 조치사유

가.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(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)

□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○ ㈜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 등 83명은 2021.4.1.~2024.3.26. 기간 중 ○○○○○○○ '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' 등 61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(초회보험료 57백만원, 수입수수료 418백만원)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794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

○ 이는 **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1항 제5호** 및 **제3항 제2호 위반**에 해당

<관련법규>

- 「보험업법」 제97조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 제1항 및 제3항
- 「보험업법」 제209조(과태료) 제7항 제7호

< 붙임 1 >

관 계 법 규

□ 보험업법

제97조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~ 4. (삭 제)

5.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(이하 이 조에서 "기존보험계약"이라 한다)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

6. ~ 11. (생 략)

② (삭 제)

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(생 략)

2.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

④ ~ ⑥ (생 략)

제209조(과태료) ① ~ ⑥ (생 략)
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6. (생 략)

7.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·제96조제1항·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. 다만,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
7의2. ~ 17. (생 략)

⑧ (생 략)

□ 보험업법 시행령

제10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0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
[별표9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04조 관련)

1. 일반기준 (생 략)

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
모.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법 제95조의2·제96조제1항·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. 다만,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209조 제7항제7호	700 다만, 법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
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

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,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, <별표3>과태료 부과기준 및 <별표6>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④ 삭 제

⑤ 삭 제

⑥ 삭 제

제47조의5(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) ① 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등(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·보험설계사·보험계리사 <선임계리사포함>·보험계리업자·손해사정사·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<별표 5>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.

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, 검사결과의 보고, 통보, 조치 및 사후관리, 제재의 가중·감면·병과조치·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, 제3장, 제20조, 제4장 제2절(제27조를 제외한다)·제3절·제4절(제38조를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
[별표3]

과태료 부과기준

1. 목 적 (생 략)

2. 과태료 산정방식

가. ~ 다. (생 략)

라. 위반자에게 가중·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·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.

마.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·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.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.

바.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3. 예정금액의 산정

가. (생 략)

※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1)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
(2)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
(3)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나. ~ 다. (생 략)

4..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

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 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을 결정한다.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, 나목 (5), (6) 및 (9)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.

가. 가중 사유

(1) 삭 제

(2) (생 략)

(3) ~ (4) 삭 제

나. 감경 사유 (생 략)

5. (생 략)

6. 기 타

최종 과태료 부과금액(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)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.

[별표6]

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

1. 목 적

이 기준은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 행위가 경합하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의 건수를 산정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적용되는 예정비율 또는 위반결과의 판단기준 등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2.「보험업법」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

가.「보험업법」제85조제2항(보험설계사의 모집제한 위반), 제95조의2(설명의무 위반), 제96조제1항(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위반), 제97조제1항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) 및 제209조제5항제2호제6호·제7호·제9호·제10호

(1) 적용범위 : 보험설계사·보험대리점·보험중개사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

(2) 위반건수의 산정 : 위반행위를 한 보험계약(신계약으로 한다)의 수

(3) 예정비율의 산정(법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정비율의 40% 수준 적용)

동기 / 위반결과	상	중	하
중 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55%	법정최고금액의 45%
보 통	법정최고금액의 50%	법정최고금액의 30%	법정최고금액의 20%
경 미	법정최고금액의 20%	법정최고금액의 15%	법정최고금액의 5%

※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) 중 대 : 보험계약별 수입수수료 200만원 이상
2) 보 통 : 보험계약별 수입수수료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
3) 경 미 : 보험계약별 수입수수료 50만원 미만

나. ~ 라. (생 략)

< 붙임 2 >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㈜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 : 2026. . . (검사서 통보일)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보험대리점	기관주의(조치생략[주]) 과태료 5억 4,350만원 부과
임원	주의(조치생략[주]) 1명
보험설계사	등록취소 : 1명 업무정지 30일 : 5명 과태료 120만원 ~ 1,240만원 부과 : 79명

주) 동 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한 검사('24.6.26.~.7.19.) 결과 적발된 특별이익 제공 등에 대하여 분리처리('25.8.26. 제12차 제재위 부의)한 바 있고, 서로 다른 위법행위와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종전 제재수준(기관주의)이 높아지지 않으므로 "조치 생략"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
(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)

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

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○ ㈜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83명은 2021.4.1. ~ 2024.3.26. 기간 중 ㉮보험 등 616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(초회보험료 57백만원, 수입수수료 418백만원)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(794건)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1.「보험업법」제97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제2호

(2)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

□「보험업법」제98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○ ㈜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2023.3.10.~2024.3.22. 기간 중 ㉯보험 등 총 15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丙 등 139명에게 총 6.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.

< 관련규정 >
1.「보험업법」제98조 제1호 및 제4호
2.「보험업법」시행령 제46조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보험과	보험검사3국
연 락 처	02-2100-2964	02-3145-7273